

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1. 2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규칙명 :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담양군 문화재단의 임원 선출을 위한 공개모집 시 ‘임원선정위원회’에 군의원 포함이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 ‘겸직 등 금지’에 위배되어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: 정관 및 규정에 의거(안 제8조3항)

나. 임원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: 군의원 포함 조항 삭제

(안 제8조3항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. 20.~1. 27.(8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본문 중 “정관”을 “정관 및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 (임원) ① · ② (생 략)	제8조 (임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
③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<u>정관</u>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단, <u>임원선정위원회는</u> <u>군위원을 포함한다.</u>	③ ----- ----- <u>정관 및 규정</u> ----- -----. <u><단서 삭제></u>